대전고등법원 공고 제2026-15호

속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안)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2호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8.

대 전 고 등 법 원 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근무 예정지역	채용예정 인원	비고
속기서기보(9급)	대전고등법원 관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명 내외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가. 재판 또는 회의관련 속기업무

나. 사무업무지원 (일반행정, 송무, 부속실 지원 업무)

다. 민원업무 및 기타 사법행정업무 지원

라.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2차 전형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성별

- 제한 없음

마. 응시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바.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 속기 경력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법인 등

-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8. 시험에 의한 가산특전 참고)**

요 건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제출 서류)
저소득층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

		부모 증명서(지원기간 명시)
	· 위 ①, ②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함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 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기 바람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 위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1차 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1차 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2차 전형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 11. 26.(목)	2026. 12. 1.(화)	2026. 12. 3.(목)	2026. 12. 4.(금)

※ 1차 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 소식]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6. 11. 25.(수) ~ 2026. 11. 26.(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고등법원 9층 총무과(☎ 042-470-1105)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우편 접수처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대전고등법원 9층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 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도착하는 우편물까지 유효)(단체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교부하는 데 필요한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동봉(접수처에서 기재하지 않음)**

※ 등기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속기서기보(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반송용 봉투는 A4 사이즈로 할 것)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5,000원)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 동봉하여야 하

며,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시 접수하지 않음(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제출자는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접수처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 확인 바람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 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책임(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미도착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미부착, 붙임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사진 미부착, 붙임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양식) 1부

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양식,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1부

※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 자격증 사본 1부**(추후 원본 대조함)**

바. 우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추후 원본 대조함)**

사. 속기 관련 경력증명서 원본 1부**(재직증명서는 인정 안됨)**

※ 경력증명서는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아.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우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부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카.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증빙자료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자격 및 경력은 증명서가 제출(해당 사실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모든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요함

※ 각종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적절한 방법(수정테이프 등)으로 생략 후 제출 요함(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기되도록 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 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첨부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1차 전형과 2차 전형 만점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10% 또는 5%를 가산함

※ 위 해당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1명인 경우 제외)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 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 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붙임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속기서기보로 채용하되, 채용시기 및 근

무장소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법원 총무과(☎ 042-470-1105)에 문의하시기 바람

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직무기술서

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고등법원 관내 법원	전 부서

주요업무	○ 재판 또는 회의관련 속기업무 ○ 사무업무지원 (일반행정, 송무, 부속실 지원 업무) ○ 민원업무 및 기타 사법행정업무 지원 ○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친절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업무추진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화능력, 업무숙지능력

필요지식	○ 재판관련 속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 ○ 일반행정, 송무, 판사실 지원업무를 수행할 행정 업무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속기**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급] ○ 속기 관련 경력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법인 등의 속기 경력 증명서 또는 소명자료가 있는 경력에 한함) ○ 저소득층,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